#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95 발의연월일: 2025. 6. 10.

발 의 자:신장식·차규근·서왕진

김선민 • 황운하 • 강경숙

김재원 • 박은정 • 백선희

김준형 • 이해민 • 김남근

민병덕 · 강준현 의원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자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독일·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 법은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자주주

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 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여 상장회사의 의사결 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닌 전체 이사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이사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 나.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 다.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 1)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

록 하며,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를 환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388조).

2)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수위원회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체 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6).

법률 제 호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의 제목 "(理事의 忠實義務)"를 "(이사의 충실의무 등)"으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 및 주주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88조의 제목 "(理事의 報酬)"를 "(이사의 보수)"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 중 "理事의 報酬는 定款에 그 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를 "이사의 보수(상여금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② 회사는 지속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

가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경우,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2조의16(보수위원회)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한다.
  - 1.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의 심의·의결 가. 이사
    - 나.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
  - 3. 보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제388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第382條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에--회사 및 주주를---직무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충실하게----. <신 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 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第388條(理事의 報酬) 理事의 報 第388條(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상여금 기타 직무수행의 酬는 定款에 그 額을 定하지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아니한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 議로 이를 定한다. 이익을 포함한다)----. <신 설> ② 회사는 지속적인 기업경영 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가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경우,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 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신 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신 \_설>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에 대하 여 주주총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 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 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 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 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 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

<신 설>

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 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 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 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 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 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 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 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 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 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 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6(보수위원회)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수위원회

<신 설>

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의 심의·의결가. 이사
  - 나.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 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 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 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
- 3. 보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의 작성 및 공

   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 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 이사로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제388조제2항 에 따라 임원의 보수체계를 마 런하여야 한다.